

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60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1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6. 1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6. 18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「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」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당항포관광지, 연화산도립공원,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 일원화로 조직의 기능강화 및 관광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조정을 위하여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실·과 분장사무 일부 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#### 1. 기획감사실

-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(신설)

#### 2. 행정과

- 국제협력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(신설)

#### 3. 환경녹지과

- 등산로 개발, 산지자원개발에 관한 사항(신설)

#### 4. 해양수산과

-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(신설)

나.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 함.(안 제10조)

-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→ 관광지관리사업소

다. 사업소 소관사무 일부 개정함.(안 제12조제2호)

1. 관광지관리사업소

- 고성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신설)
-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(신설)
- 「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」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(신설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「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」 지원체제로의 전환과 당항포관광지, 연화산도립공원,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 일원화로 조직의 기능강화 및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본청 실·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변경과 함께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기존 당항포관광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이외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,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사항, 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사항, 「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」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늦은 감이 있으나 타당 하다고 생각되나
- 조례안 제12조제2호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관장사무가 당항포관광지, 연화산도립공원, 상족암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사항 등으로 관광지가 각각 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읍면직원 결원에 대한 대책은?
- 답 : 읍면결원에 대하여 지난 6. 13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충원 하겠음.
- 문 : 보건직공무원 8급을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배치하고 있으나, 읍면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?
- 답 : 보건직 8급에서 오랫동안 근무 후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 규칙에 의하여 7급으로 승진하여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.
- 문 :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수출담당을 신설한 사유는?
- 답 :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, 양란, 호박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함.

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6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